

저작권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방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이 전면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작자나 저작물 이용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저작권 침해 및 이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저작권분쟁의 증가에 따른 간이 분쟁해결 절차의 필요성에 의해 개정저작권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와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장인숙)에 따르면, 동위원회 창립 이후 3년여동안 저작권분쟁 조정신청은 모두 27건이 접수돼 이중 11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11건이 불성립, 3건이 조정 진행중 당사자간의 해결로 취하됐고, 2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88년과 89년이 9건이었는데 반해, 90년도에 들어와서는 반년만에 9건을 기록해 저작권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위원회측은 이 조정건수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극히 적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분쟁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거나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제도가 있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조정이 불성립된 11건의 경우 대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피신청인의 불응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동위원회측은 저작권분쟁조정제도가 전문가의 판단과 조언에 따라 당사자간의 양보와 이해에 바탕을 두고 합의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는 합리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없는 점을 기화로 신청인측이 장기간의 시일과 많은 비용 및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법절차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피신청인측의 계산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례 중 출판관련부분을 소개한다. (저작권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적 비밀이 유지되어 당사자의 명예가 보호되도록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 문제가 된 저작물의 제목 등은 이니셜로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가 피신청인의 조정불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기 이전에는

조정내용이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기화로, 신청인측이 복잡한

사법절차로까지 일을 '벌리지는'

않으리라는 피신청인측의 계산된 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

반면, 피신청인측에서는 위 수기를 월간지에 수록할 때 학보사 담당기자 및 신청인의 구두 허락을 당시 담당기자를 통해 받았으며, 만약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신청인의 신청내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이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저작권법상 민·형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할 것을 권고,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③ 피신청인은 추후 신청인의 허락없이는 문제된 저작물을 게재하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

③ 신청인 S씨(D사 대표)는 「○○반편성 배치고사 문제은행」이란 학습지를 86년부터 매년 발행해왔는데 피신청인 K씨(K사 대표)가 위 학습지를 편집체재 뿐 아니라 문항 및 삽화의 80% 이상을 도용, 문제의 배열만 변경한 「××반편성 배치고사」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900만원과 재고도서 및 지형 폐기를 청구.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위 학습지의 지형은 자신이 K사를 창업하기 이전의 근무처에서 채무변제 형식으로 넘겨받았으며 출판과 관련해서도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에게 지시하여 재출제하다시피 수정보완했으나, 조정부가 두 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하면 그를 따를 것이며 신청인의 주장인 5000부 발행은 사실과 다르고 3000부만 출판했다고 주장.

조정부가 두 저작물을 검토한 결과 유사비율이 70%로 판단됨에 따라 ① 피신청인은 「××반편성 배치고사」를 출판판매치 않으며 ② 그 지형을 신청인에게 인도하며 ③ 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 성립.

④ 신청인 K씨는 피신청인 J씨(I기획 대표)와 87년 출판계약을 체결 「한국고대사△」을 출판했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인지없이 출판배포하여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67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 조정을 구함.

이에 피신청인측에서는 당초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를 3000매 수령하여 2000부 발생시 첨부한 다음 1000매는 별도로 보관중인 바, 500부를 재판발행하면서 첨부하지 못했음을 시인, 이에 500부에 대한 인세지급 의사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① 피신청인은 25만원을

해설

저작권분쟁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그 내용이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고 다툼액이 비교적 소액인데 비해 상당한 법률지식이 요구되고 진행과정이 난해하며, 과다한 비용과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소송절차에 의존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저작권법 제7장(제81조부터 제90조까지)에 규정돼 있는 저작권분쟁조정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내에 협의판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부장 1인과 대학교수 1인, 저작권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각종 증거조사 등을 거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당사자 상호이해와 양보정신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정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처리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분 부여규칙(대법원규칙 제1051호)'에 의거 조정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그 조정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상 또는 개인적 비밀이 유지되어 당사자의 명예가 보호되며, 상호이해와 양보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합의에 의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조정후에도 당사자간의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정태 저작권심의조정위 심의조정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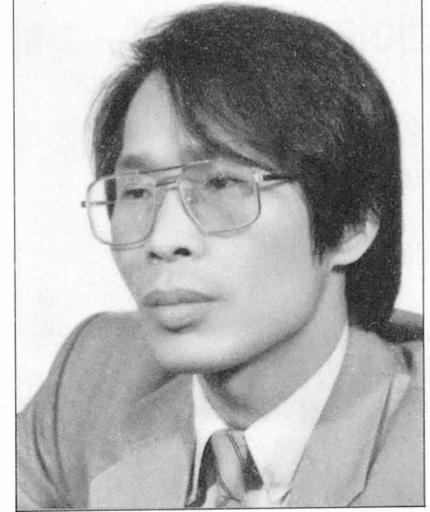
사슴의 생태와 인간의 性

장편소설 「뿔」

이유범

소설가

사슴의 생태를 염두에 둔 줄기는 물론 밥과 생식의 둘이었다.
나는 우선 생식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정확히 말하면, 사슴의 생식에서 자연과 조화된 어떤 섭리를 느꼈다.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② 신청인의 「한국고대 사△△」의 지형을 신청인 입회하에 파기하며 ③ 피신청인이 보관중인 재고분 275부 및 서울 지역 4개서점(교보, 종로, 태평, 을지) 배본분에 신청인이 교부한 인지를 첨부하기로 조정성립.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⑤ 신청인인 작가 S씨는 피신청인 N출판사와 자신의 문학선 「비○」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초판 3000부를 발행, 그에 해당하는 매수의 인지를 교부한 바 있으나, 시중에서 인지 미첩부도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는 부정출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정복제의 추정부수 5000부에 대한 부당이득 추정액 1,075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

그러나, 피신청인측에서는 인지미첩부문제가 첨부작업작업과정 또는 유통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부정출판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불성립.

⑥ 신청인 C씨는 피신청인 M씨(도서출판 S사 대표)와 77년 출판계약을 하여 자신의 저작물 「건축○○설계」를 78년 3월 1000부를 출판했으나 그 이후 10년동안 아무 이유없이 발행치 않았으므로 출판계약은 사실상 실효되었는데, 피신청인이 88년 1월에 표지도안을 변경 이를 다시 출판함으로써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만원(정가 8000원 × 저작권법에 의한 추정부수 5000부 × 인세 10%)과 위자료 50만원을 청구.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위의 저작물이 재판발행한 것이 아니라 78년 당시의 초판 재고 100여부의 책날개를 새로 만들고 판권란만 재판한 것처럼 인쇄해 덧붙인 것으로 저작권침해를 한 바 없으며, 이 100여부에 대해 초판과의 정가차액분에 대한 인세만을 신청인에게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맞서 조정불성립.

⑦ 89년 국정교과서주식회사가 발행한 국민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신청인 A씨가 그린 그림을 피신청인 K사에서 펴낸 참고서 「챔피온 △△전과」 및 「△△완전학습」에 무단으로 복제판매하고 저작자 성명표시권을 이행치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저작권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 15,010만원을 신청인이 청구함. 이와 함께 신청인은 88

년 문교부 검인정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에 신청인이 그린 그림을 또한 피신청인이 펴낸 자습서에 무단으로 복제, 판매한데 따른 손해 배상금 6503만원을 청구, 도합 2억 1513만원을 지급토록 조정신청하는 한편 신청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와 참고서에 자신의 성명표시를 청구.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은 ① 교과서의 판권면에 지은이가 문교부로 표시돼 있으므로 문교부가 저작권자로 판단되며 교과서에 관련된 많은 집필자 및 삽화가들과 출판사간에 개별적으로 저작권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고 ② 성명표시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부칙 제6조에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때는 법시행 후 5년 이내에 한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③ 참고서에 전재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교과서를 위해 삽화를 산 경우에는 이것을 당연히 참고서에 사용할 것이라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며 이것이 현재까지의 관행임을 들고 나음으로써 조정 불성립.

⑧ 신청인 B씨는 「○○기독교강요」의 번역 저작권자 L씨로부터 동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인 바, 피신청인 S씨가 발행한 같은 제목의 책이 신청인의 「○○기독교강요」와 80% 이상이 동일한 복제물로서 신청인의 저작재산을 침해하였기에 피신청인이 동 도서의 출판으로부터 얻은 이익 추정액 24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지형을 폐기토록 하는 조정을 청구했으나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

— 최태원 기자

약십년 전 쯤, 비교적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슴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사육되는 것이긴 했지만 사슴의 살아가는 모습은 한 마디로 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자연의 한 개체로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삶, 그 삶의 모습이 곧 생명있는 모든 것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은 차라리 당연한 것이었다.

동물인 사슴의 생태를 염두에 둔 줄기는 물론 밥과 생식의 둘이었다. 나는 우선 생식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슴의 생식의 모습에서 자연과 조화된 섭리를 느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생식의 모습을 관찰하는데에는 사슴의 뿔이 그 확실한 징표가 된다.— 그것이 작품의 제목을 「뿔」로 만든 까닭이기도 하지만— 뿔의 변화와 함께 드러나는 사슴의 짹 고르기·교미·잉태·출산 등은 계절·기후·환경 따위 자연적 조건들과 조금도 어긋남 없이 잘 어울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비 이전에 놀라운 아름다움이었다.

사슴을 관찰하던 시각을 우리 인간에게 돌렸을 때, 즉 생식을 성(sex)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그 모습은 일단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특수한 한 부분을 빼면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말 인간은 자연과는 조화할 수 없는, 자연을 닮지 않은 별개의 존재인가. 자연의 법칙, 섭리는 과연 인간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이 성을 섭리의 눈이 아닌 의지의 눈, 그 가운데에서도 욕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욕심의 의지만을 앞세우는 것은 불균형의 오류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의 모습을 생각하고 찾기 시작했다. 추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 피할 수 있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또 안타까운 것도 있었다. 그리하여, 사슴의 생식을 밀바닥에 놓고 그 위에 이러한 다양한 인간 성의 모습들을 포개어 놓았다. 신이 내린 성의 본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인간의 의지가 빛어내는 변태된 성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언뜻 보기에 사람들의 성에는 보편적인 원리가 없어 보인다. 그만큼 다양하다. 상당 부분 짐승의 그것과 아주 흡사한 일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생각이 되풀이되는 동안 나는, 시야를 넓히면, 즉 인간의 한 계절을 전체 삶의 길이로 바꾸면 거기에도 어떠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순응하는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 생각의 옳고 그름을 나는 겸증할 길이 없다. 그런 면에서라면 나 역시 한 계절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중편으로 완성했다가 아무래도 미흡한 생각이 들어 장편으로 바꾸었다. 초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또 몇 년을 더 묵혔다. 그리고는 올여름 무더위에 다시 개작을 시작했다. 초고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었던 까닭에 이달 안으로 이 정도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특히 중·장편의 경우, 내 소설이 읽기 어렵다고 한다. 이번에는 그 고정관념(?)들도 상당히 바꾸어 놓을 수 있으리라.